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예선 문제

2016. 8. 24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운영위원회

## [문제]

- 귀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된 손해배상(기) 등 사건(사건번호 2016가합68024)의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를 각각 수행하게 될 변호사임(민사 제22부)
- 귀하는 이 사건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사실관계는 [첨부 1]과 같음
-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피고의 대리인 및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준비서면**을 작성할 것
- 원고의 주장을 정리한 **준비서면**과 피고의 주장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모두 작성·제출하여야 함. (원고 준비서면의 경우 소장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맞추어 기재하고, 원칙적으로 청구취지를 새롭게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말 것. 단, 주어진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서 법률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준비서면에서 이 부분을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준비서면에는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법률상 주장 등에 대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법률상 주장은 권리의 성립요건, 근거 등에 관하여 상세히 논리적으로 전개하며, 쟁점에 관하여 견해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되,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례의 취지를 적시한 후 이를 적절한 논거에 의하여 비판할 것
- 문서제목은 원고측은 “원고준비서면”, 피고측은 “피고준비서면”으로, 작성일자는 모두 실제 제출일자로 함 (예 : 원고준비서면-변론의신.hwp, 피고준비서면-변론의신.hwp)
- 준비서면은 각각 표지를 제외하고 각 15장 이내로 함(원고 준비서면 15장 이내, 피고 준비서면 15장 이내, 폰트 맑은고딕, 폰트크기 10pt, 줄간격 160%)
- 양쪽 당사자로부터 사실관계를 알게 된 상황 및 동일한 변호사가 원/피고 양측을 모두 대리하는 것에 관한 변호사윤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할 것
- 첨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모두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첨부 사실관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내용을 불문하고 증거가 없다고 봄. 다만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공지의 사실 등은 원용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출하는 서면의 원고 소송대리인 이름은 “법무법인 정통, 담당변호사 정보호”로 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이름은 “법무법인 율음, 담당변호사 나승소”로 표기하되, 서면 자체에는 참가팀의 소속 학교/법전원 등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각 서면의 제출기한은 2016. 9. 21.(수) 24:00까지이고, 이메일([moot@cpoforum.or.kr](mailto:moot@cpoforum.or.kr))로 제출할 것
- 이 사건 사실관계는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위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것으로, 실존하는 특정 인물, 기업, 단체 등과 전혀 관계없음
- 원·피고 소송대리인 모두 특정한 일부에 대해서만 변론이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사실관계

1. A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인터넷 쇼핑몰 B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B는 이른바 오픈마켓 쇼핑몰로,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웹사이트이다. B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일상생활 용품부터 도서, 음반까지 매우 다양하다. B의 가입자 수는 1,500만명에 달한다. B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 서비스 이용약관 제8조(개인정보보호)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회사의 웹사이트([www.AsaBmall.com](http://www.AsaBmall.com)) 상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2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사가 취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 ③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 ④ 법령이 요구하는 정보에 관하여 암호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A사는 B 쇼핑몰에서의 고객들의 구매 행태, 고객의 특성 등을 바탕으로 B의 사이트 배치 개선, 상품 추천 등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바, 알고리즘 개발의 목적으로 2016. 5. 1. 전체 가입자 중 최근 3개월 구매 횟수 기준 상위 200만명의 정보에서 ID, 성별, 나이, 거주지('동'까지 기재), 최근 3개월간의 구매내역을 추출하여 별도 DB(이하 '분석용 DB')를 작성하였다. 위 구매내역에 포함된 정보는 구매 일시, 구매한 물품명, 물품의 수량 및 가격, 제품 판매자, 상품평이다.
3. 한편 A사는 위 빅데이터 분석 작업을 C사에게 위탁하였다. 위 빅데이터 작업을 위하여 C사의 직원들은 계약기간 동안 A사에 상주하며 개발작업을 진행하였다. C사 개발담당자 D에게는 전항에서 작성한 A의 DB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망분리된 업무용 컴퓨터를 배정되었다. 프로젝트 진행 도중, C사의 개발담당자 D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이고 담당자 외에는 C사에서 해당 개발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이 없어서 A사는 내부 결재를 통해 VPN 사용을 승인하고 병원에서 D의 노트북으로 개발업무를 계속하도록 허용했다.
4. A사는 C사와 빅데이터 분석 작업과 관련하여 위탁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업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였으나, 해당 문서 또는 별도의 계약으로 위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

으며, 위탁업무의 내용과 업무수탁자를 A사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였을 뿐 해당 고객들로부터 위탁사실에 관한 동의를 얻은 바 없다. 또한, A사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C사의 직원들에게 프로젝트 시작 전 1회 보안교육을 시행하였으나 그 외 C사 직원들의 업무행위를 구체적으로 감독하지는 않았다. 다만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상업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교육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5. 그런데 해커가 2016. 7. 23. A의 분석용 DB를 해킹하여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자신의 PC로 1회 다운로드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A사는 2016. 7. 24. 해킹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 조사를 하다가 2016. 8. 1. 위 해킹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
6. 해커는 2016. 8. 23. 검거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커는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비상업용 무료 프로그램에 백도어 프로그램을 포함했고, 업무수탁자 C사의 개발담당자 D가 그 프로그램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자 노트북에 위 백도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 개발담당자 D가 병원에서 작업하기 위해 VPN으로 A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자 노트북을 장악하고 있던 해커가 DB시스템에 접근해서 이 사건 분석용 DB의 정보를 덤프(dump)파일로 생성하고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해킹에 의한 파일 생성 및 다운로드는 2016. 7. 23. 오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이루어졌으며 다운로드된 개인정보 데이터 크기는 대략 3GB에 달한다.
7. 그러나 다운로드받은 정보는 이미 삭제된 상태였고, 해커는 오로지 재미로 해킹을 시도해 본 것일 뿐, 정보는 모두 폐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보의 사용 여부, 추가 복제 여부, 공범의 존재, 제3자에 대한 전달 여부에 관하여도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을 입증 또는 반박할 만한 추가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8. 한편 A사는 분석용 DB 및 회사의 IT 시스템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03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기재된 보호조치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조치들은 모두 이행하였다. 그러나 실제 A사가 사용하던 솔루션을 활용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96호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별표 1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 모니터링 도구를 이용하여 백분망, 주요 노드 및 외부망과 연계되는 주요 회선의 트래픽 소통량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음에도, A사는 이 사건 분석용 DB의 다운로드와 관련하여 트래픽 모니터링을 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A사가 정보보호를 위하여 집행한 예산은 위 고시 규정과는 달리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2%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9. 또한, A사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03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망분리 의무대상자에 해당한다. A사는 망분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A사는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DB를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에 접속하여 개발을 진행하던 업무용 컴퓨터는 망분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A사 내부 개발실에 있던 업무용 컴퓨터는 내부 방침상 모두 망분리되어 있는 상태였다.

10. E, F, G는 B 사이트의 회원으로, 2016. 8. 1.에 A사로부터 개인정보유출통지를 받았다. 당시 위암수술을 한 E는 특히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B 사이트를 통하여 “위암을 이겨낸 사람들”, “위암 수술 후 식사 가이드”, “암 치료 후 건강관리 가이드” 등의 서적을 집중적으로 구매하였다. 2016. 2.에 아이를 출산한 F는 B사이트를 통하여 주로 남아용 기저귀, 젓병세정제, 물티슈 등 아기용품을 구매하고 있었다. G는 2016. 2. 15. B사이트를 통하여 스마트TV, 냉장고, 세탁기를 구매한 바 있다.
  
11. A사로부터 개인정보유출통지를 받은 E,F,G는 ‘법무법인 정통’을 찾아가 담당변호사 정보호와 상담한 후 소송대리를 위임하였고, 정보호는 2016. 8. 24. A사를 상대로,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을 근거로 각 금 3,000,000원 및 그에 대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이용약관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32조 제1항, 제32조의2 제1항 등에 기하여 각 금 1,000,000원 및 그에 대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첨부 2]

## 소 장

- 원고 1. E  
2. F  
3. G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통 담당변호사 정보호

피고 주식회사 A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000  
대표이사

손해배상(기)

###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3.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3.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원인

1. 기초사실  
(생략)

2.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회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예비적 청구원인

가. 이용계약상 의무 위반

피고회사는 원고들과 체결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32조 제1항 위반

피고회사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법정손해배상 청구

위와 같이 원고들은 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 따라 피고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 법정손해배상 규정에 의해 위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한다.

4. 결론

(생략)

2016. 8. 24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통  
담당변호사 정보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